

# 간호학과 예·결산 심의 운영세칙

제정 2026. 04. 13.

**제1조(목적)** 본 운영세칙은 경동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 「재무회계 규정」을 근거로 하여 간호학과(이하 ‘학과’라 한다)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, 책무성과 성과 중심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대학 특성화 발전 및 교육성과 향상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운영세칙은 학과의 교육·연구·실습·특성화사업 등 제반 재정 운영과 관련된 예산 및 결산 편성·집행·심의·평가·환류 전 과정에 적용한다.

**제3조(운영원칙)** ① 예산 및 결산 심의는 합리성, 공정성, 투명성, 책무성을 원칙으로 한다.  
② 예산은 대학 특성화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편성한다.  
③ 결산은 집행의 적정성, 목적 적합성, 집행률 및 성과 달성도를 중심으로 심의한다.  
④ 모든 재정 운영은 성과평가 및 환류(CQI) 체계를 반영하고,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연계한다.

**제4조(예·결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명칭)** 학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 예·결산 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

**제5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부학장이 대행한다.  
② 위원은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여 학장이 위촉한다.  
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개진을 요청할 수 있다.  
④ 간사 1인을 두며, 회의 준비 및 운영 등을 담당한다.

**제6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의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  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 
③ 위원장의 임면 또는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및 개선 과제 도출한다.  
1.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  
2. 예산 집행 현황 점검 및 적정성 검토  
3. 결산 심의  
4. 성과평가 및 CQI 환류 계획 수립

**제8조(위원회 회의)** 위원회 회의는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18조에 따른다.

**제9조(위원회 회의록)** 위원회 회의록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19조에 따른다.

**제10조(예산 편성 주체)** ① 학과 예산은 특성화발전위원회에서 편성한다.

② 학과 예산 편성 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, 특성화 전략, 교육성과 지표, 인증 기준 및 전년도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예산 심의 절차)** ① 학과 특성화발전위원회는 예산편성(안)을 위원회에 제출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중심으로 심의한다.

1. 사업 목표와의 정합성
2. 자원 배분의 적절성
3. 우선순위 설정의 타당성
4. 성과지표 반영 여부 및 투자 대비 효과성

③ 심의 결과는 교수회에 보고하고, 교수회에서 최종 확정한다.

**제12조(추가경정예산)** ① 회계연도 중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과 특성화발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(안)을 편성한다.

② 추가경정예산(안)은 위원회 심의 및 학과 교수회 승인을 거쳐 대학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**제13조(예산 집행)** ① 예산 집행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.

② 각 부서는 대학 회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.

③ 집행 관련 증빙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성과평가·감사·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
**제14조(결산 작성)** ① 결산은 각 부서별로 한다.

② 결산 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
1. 예산 대비 집행 현황
2. 집행률
3. 미집행 발생 사유 및 개선 방안

**제15조(성과평가 및 질 개선)**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성과평가 및 CQI를 실시한다.

② 평가는 정량·정성 지표를 활용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를 종합 분석한다.

③ 평가 결과는 개선 과제로 도출하여 차년도 운영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.

**제16조(보고서 및 자료관리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연 1회 이상 작성·관리한다.

1. 부서별 운영계획서
2. 부서별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
3. 예산·결산 심의 자료
4. 성과 증빙자료

**제17조(준용)**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56조에 따른다.

**제18조(운영세칙 개정)** 본 운영세칙의 개정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57조 제2항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본 운영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.